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일부개정 알림

1. 관련 :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4289호)
2.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비용의 지원 범위·기준 등 마련, 살처분 처리비용의 국비지원 조건 및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시행일: '24.3.15.)
3. 이와 관련하여 각 시·도, 관련 협회·단체에서는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홍보·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,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4289호)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 관련부서, 시도 방역부서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, (사) 전국한우협회장, (사)한국낙농육우협회장,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, 대한양계협회장, (사)한국육계협회장,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장,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장, (사)한국오리협회장

주무관 이민희 서기관 박경일 방역정책과장 이동식 전결 2024. 3. 14.

협조자

시행 방역정책과-1592 (2024. 3. 14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520 팩스번호 044-868-0628 / lmh5124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